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48
----------	-------

발의연월일 : 2026. 10. 8.

발 의 자 : 이수진 · 최혁진 · 송옥주
남인순 · 민병덕 · 전진숙
김정호 · 백혜련 · 이언주
안도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각각 보충역에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년 6개월까지 단축되는 등 대폭 개선된 반면, 공중보건 의사 등 전문자격 보충역의 복무기간은 제도 도입 이래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군사교육소집 기간까지 고려한 실질 복무 부담이 현역병의 2배를 넘는 상황임. 참고로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고 있어 형평성이 지적되고 있음.

그 결과 전문자격 소지자가 해당 분야 편입을 기피하고, 대신 현역 병 입영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의과대학생의 현역병 입영은 2020년 약 150명에서 2025년 약 2,900명으로 급증하였고, 2026년 신규 편입 의과 공중보건과의사는 98명(당해 연도 복무만료 예정 인원 450명의 22% 수준), 공중방역수의사는 2명에 그쳤으며, 공익법무관도 정원 미달이 지속되는 등 지역 필수의료·공공법률·가축방역 등 공공서비스 전반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과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전문자격 기반 보충역 복무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중보건과의사 등 전문자격 기반 보충역 분야로의 편입 유인을 회복하고 공공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현실을 감안한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 변동 통보사항을 이에 맞춰 조정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 단서,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3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

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9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2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1호 및 제3호 중”로 한다.

제34조의6제2항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34조의7제2항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산입한다”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
의사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3항, 제34조의6제2
항·제3항 및 제34조의7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편입되는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공익법무관·공
중방역수의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 중인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이 법의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
여 각 부의 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편입시기별 단축기간
을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공중보건 의사 등의 편입)	제34조(공중보건 의사 등의 편입)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u>3</u> 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 ----- ----- ----- <u>2</u> <u>년간</u> ----- ----- -----.
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u>하</u> 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u>산입하지 아니한다.</u>	③ ----- ----- ----- ----- <u>한</u> <u>다.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u> <u>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u> <u>다.</u>
<u><후단 신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u>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u> 어느 하나에	제34조의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 ----- ----- ----- ----- ----- <u>제1호</u> <u>및 제3호 중</u>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④ (생략)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

1. ~ 7. (현행과 같음)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2년간-~~-----

-----.

③ -----

-----한
다.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
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
다.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2년간---~~-----

-----.

③ -----

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군사
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군사
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
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
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
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 7. (생략)

②·③ (생략)

-----.

-----산입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
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

-----.

1. (현행과 같음)

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
률」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
라 공중방역수의사 신분이 박
탈된 경우

3.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